



Q 서울복지포털 알고 계시나요?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검색 → 왼쪽 상단 '장애인특별공급' 클릭



특별공급소식, 신청가이드,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is.seoul.go.kr/main.do>

Q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 성명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신규신청 가능
- ✓ 신청이 잘 되어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정보를 입력한 후 '이미 등록 되어있습니다.'의 문구를 통해 확인 가능

□ 특별공급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 공백없이 입력하십시오.
휴대전화번호		※ 숫자만 입력하십시오.

※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02-2133-9613, 02-2133-7366(서울시 상담지원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사업 안내

확인

앗! 신청하셨는데, 문자가 안 온다고요?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새 소식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 포털에서 전화번호가 맞게 등록되었는지 재확인해보시고, 핸드폰에서 수신거부 혹은 삭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주세요!

2

Q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 0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불필요
- 02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함)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서울시 외 타 시·도 거주자는 서울시 기관추천 신청 불가
- 0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동거인,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에 포함X



3

Q

◆ 세대 관련 문의 ◆

Q1 장애인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나요, 세대주여야 하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 형제자매, 이모, 고모, 조카,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마.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4

Q

◆ 무주택 관련 문의 ◆

Q1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2.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3.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임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재산세 과세내역으로 주택소유여부 판단

Q2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만 60세가 넘은**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5

Q

◆ 배점 관련 문의 ◆

Q1 장애인 특별공급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되나요?

평점요소에는 장애정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Q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예: 등급제 폐지 전 2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폐지 전 1~3급) 20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폐지 전 4~6급) 10점입니다.

Q3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나요?

신청 장애인 외 세대원 중 장애인이 1명 있는 경우 5점,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이 주어집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가점산정을 도와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장애인 특별공급'→'신청가이드-붙임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

Q

◆ 중복신청 관련 문의? ◆



01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기관추천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청약접수일이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접수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청약홈(1644-7445)으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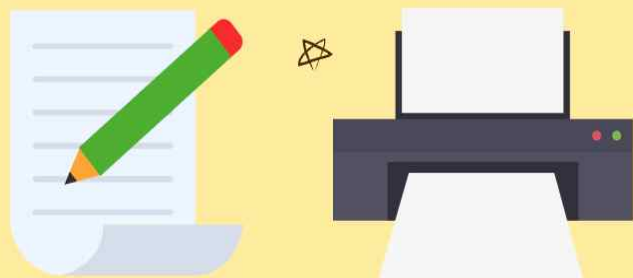
02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어떤 게 당첨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과 관계없이 **'추천명단 발표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발표된 건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자동 삭제**됩니다. 발표일이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추천해드립니다.

7

Q ◆ 기관추천 명단 공고 전에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추천 명단 공고 전에 분양의사가 없어질 경우,
기관추천 포기서약서를 제출 기한 내에 '주민센터'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포기서약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시
면 추천대상에서 미리 제외되므로 재추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출기한은 각 안내 공문 및 서울복지포털 공지 참고
*팩스번호: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연락 필수

Q ◆ 기관추천 확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01

어떤 경우에 6개월
재추천 제한이 적용되나요?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확
정자'로 선정되었는데 청
약을 하지 않으시면 '서울
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
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
됩니다. 이후 다시 기관추
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청약을 하고 당첨되었는
데 재당첨 기회가 있나요?

특별공급은 1세대 1회만
가능하므로 특별공급 재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확정 이후 청약
절차는 청약홈(1644-74
45)으로 문의바랍니다.

Q

◇ 기관추천 예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Q1 예비자 후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분양의사가 **있으시면**

청약일에 청약신청을 해야 예비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예비자와 모아서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 분양의사가 **없으시면**

예비자는 청약 미신청 시 포기로 간주되며, 재추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예비자에서 확정자로 변경되면 서울시에서 연락을 주나요?

기관추천 이후의 절차는 서울시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예비자에서 확정자로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문의는
청약홈(1644-7445)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시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02-2133-9613

☎ 02-2133-7366

